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80681		
최초 등록일	2018. 7. 13.	최종 등록일	2024.12.27.

우리동네맛집 청해코다리

정보공개서

[더라인]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더라인

대 표 번 호	1 5 8 8 - 0 2 0 8	팩 스 번 호	
가 맹 사 업 부 서	가맹본부	전 화 번 호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경춘북로 613 번길, 15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 보 공 개 사 항

1. 당사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당사의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소			
더라인	우리동네맛집 청해코다리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경춘북로 613 번길, 15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14 년 10 월 20 일	권유자	1588-0208	-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224-05-84372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해당사항 없음

3. 인수·합병 여부

당사는 바로 전 3 년 동안 다음과 같은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귀하가 향후 영위할 우리동네맛집 청해코다리의 명칭·상호·서비스표·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브랜드 명	상호	서비스표	BI
우리동네맛집 청해코다리	우리동네맛집 청해코다리 00 점 (해당 지역명 표기)	해당사항 없음	 매콤 코다리조림 전문점

5. 가맹본부의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가. 당사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천원/VAT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년	-	-	-	84,162	-	-
2022 년	-	-	-	248,936	-	-
2023 년	-	-	-	406,796	-	-

당사는 가맹사업 외에 도소매에서만 매출이 발생합니다.

나.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표지	연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매출액	상한	하한
우리동네맛집청해 코다리	2021 년	-	-	-
	2022 년	-	-	-
	2023 년	-	-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성명	직위	개인별 사업경력		
			사업기간	사업내용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권유자	대표이사	2018.2 ~ 현재	더라인	경영전반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 준 시 점	임원수(명)		직원 수(명)
	상근	비상근	
2023 년 12 월 31 일	1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우리동네맛집 청해코다리 가맹사업 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당사의 우리동네맛집 청해코다리와 관련한 상표를 출원 준비 중이므로 이에 대한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II. 당사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2018. 1. 1.

2. 우리동네맛집 청해코다리의 연혁

우리동네맛집 청해코다리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더라인	우리동네맛집 청해코다리	권유자	2018.2 ~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경춘북로 613 번길, 15

3. 우리동네맛집 청해코다리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우리동네맛집 청해코다리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외식	코다리

4.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 말 우리동네맛집 청해코다리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우리동네맛집 청해코다리의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지역	2021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			2023년 12월 31일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5.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 말 우리동네맛집 청해코다리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당사의 우리동네맛집 청해코다리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 신규개점·계약종료·계약해지·명의변경한 가맹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연 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 말
2021 년	3	0	3	0	0	0
2022 년	0	0	0	0	0	0
2023 년	0	0	0	0	0	0

6. (최근 3 년 동안) 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우리동네맛집 청해코다리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 기준

우리동네맛집 청해코다리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 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 년 말 가맹점 수	2023 년 평균 매출액						비고
		평균 매출액	면적 3.3 m ²	상한	면적 3.3 m ²	하한	면적 3.3 m ²	
전체								5 곳 미만
서울								5 곳 미만
부산								5 곳 미만
대구								5 곳 미만
인천								5 곳 미만
광주								5 곳 미만
대전								5 곳 미만
울산								5 곳 미만
세종								5 곳 미만
경기								5 곳 미만
강원								5 곳 미만
충북								5 곳 미만
충남								5 곳 미만

전북								5 곳 미만
전남								5 곳 미만
경북								5 곳 미만
경남								5 곳 미만
제주								5 곳 미만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으로, 영업일이 1 년이 안 되는 가맹점은 월평균 매출액을 산출한 다음 1 년으로 환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3 개월 미만 영업한 가맹점의 데이터는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우리동네맛집 청해코다리]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우리동네맛집 청해코다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0	0

9.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 현황

우리동네맛집 청해코다리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바로 전 사업연도의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 년에 우리동네맛집 청해코다리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	-	
광고	신문, 잡지	연중	-	-	-	
판촉	전단지	연중	-	-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명	담당 부서	주 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기업고객팀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 로 46-1	031-571-7128

*귀하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비고
신한은행 계좌 있는 사업자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신한은행 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④ 가맹금예치증서 교부받아 보관	
신한은행 계좌 없는 사업자	신한은행 계좌개설 후 위의 절차 실행	
계좌 개설시 필요서류	본인이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대리인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③ 위임장 ④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나.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다.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피해보상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우리동네맛집 청해코다리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부담이 필요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최초 가맹금

1) 귀하(신규 가입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역	금액(단위:원) (VAT 포함)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합계	11,000,000		
가맹비	1. 가입비 2. 최초 가맹점 오픈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대가 3. 최초 가맹점 오픈을 위한 인력지원의 대가	7,700,000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	개점 전 교육비(최대2인)	3,300,000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2) 귀하(기존 가맹점 양수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역	금액(단위:원) (VAT 포함)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합계	6,600,000		
양수 가맹비	1. 양수 가맹점 운영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의 대가 2. 양수 가맹점 오픈을 위한 인력지원의 대가	3,300,000	가맹점 영업시작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오픈을 위하 여 소요되는 실비의 개념으로 소멸성 비 용
교육비	양수 교육비	3,300,000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교육을 위해 소요되

			오픈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는 소멸성 비용
--	--	--	----------------------------------	----------

나. 보증금

귀하(가맹점 양수자 포함)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역	금액(단위:원)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계약이행 보증금	가맹계약 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액	2,000,000	계약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을 정산 후 반환	미납 채무가 보증금을 초 과하는 경우

다. 예치 가맹금의 범위

귀하 또는 가맹점 양수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액(단위:원/VAT 포함)	
합 계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13,000,000	8,600,000
가맹비	7,700,000	3,300,000
교육비	3,300,000	3,300,000
보증금	2,000,000	2,000,000

라.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다른 비용의 추정치

귀하(신규가입자)가 그 밖에 우리동네맛집 청해코다리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자의 경우 아래의 품목 중 당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품목이 있을 경우 이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132.23m² 기준/단위:원/VAT 포함)

품목	지급 대상	금액	면적 3.3 m ² 당	지급 기한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인테리어 설비	가맹본부	52,800,000	1,320,000	계약 시 개별 협의	설치 전 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간판 및 사인물	가맹본부	9,900,000			
의탁자, 집기 등	가맹본부	31,900,000			설치 전 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오픈준비물	가맹본부	1,100,000			미제공 시 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합계		95,700,000			
가맹점사업자 직접시공 및 물품구입시 검수비: 3.3m ² 당 330,000원 별도추가(VAT포함)					

- ①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② 상기 비용은 철거, 외부공사, 냉난방기, 음향, TV, 닥트공사, 가스공사, 전기증설, 냉동창고, 일반창고,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③ 자세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제공안내하고 있습니다.

마. 금전지급방법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인의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준 금액(단위:원/VAT 포함)		지급시기
예치 가맹금(계약금)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계약 체결 시
	13,000,000	8,600,000 (일시불)	
중도금	기타 대금의 70%	-	인테리어 시작 시
잔금	기타 대금의 30%	-	초도물품 입고 시

*금전 지급 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바.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 시 위약금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되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금 규정을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 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해약 후 즉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10%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30%
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오픈 이전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50%

사. 가맹점 입지 선정의 주체 및 선정기준

우리동네맛집 청해코다리 가맹점 입지선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지선정의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가맹희망자	1)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아.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아닐 것 만 20 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8 세 이상일 것

자.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에 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영업 중의 부담

가.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오픈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지급 대상자	금액(단위:원/VAT 포함) 또는 산정기준	지급 기한	반환여부 및 반환조건
개점 이후 교육비	수시 교육	가맹본부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개별 청구	실비로 반환 안됨
	특별 교육	가맹본부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하여 산정		가맹점사업자가 의뢰하여 개별적으로 실시될 경우에 실비로 청구되기 때문에 반환 되지 않음
	재교육	가맹본부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교육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판촉 분담비	판촉	가맹 본부	공동 판촉 시 기획 비용은 당사 부담이며 판촉물 제작 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임. 그 밖의 판촉비용의 분담은 협의하여 결정		판촉 활동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광고 분담비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시행되는 공동 광고	가맹 본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부 부담(가맹본부 50%, 가맹점사업자 측 50% 분담 원칙) 될 수 있음		광고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POS 사용료	POS 사용대가	해당없음			
점포 환경 개선 비용	간판교체, 인테리어(장비,집기의 교체비용 제외한 실내건축공사)	가맹 본부 등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 분담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가맹본부 분담비용 40%를 제외한 나머지	개별 청구	VII-1 참조
지연 이자	금전지급의무의 지급기한 경과 시 지연이자	가맹 본부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나.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는 귀하에게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를 지급받지 않습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재고관리 감독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 POS, ERP시스템, 회계장부(이하 ‘회계자료’라 한다)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자료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가. 계약연장이나 재계약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액 (단위:원/VAT 포함)	지급기한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갱신비	11,000,000	가맹계약 만료일 10 일전	반환되지 않음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가맹계약체결 의사가 없을 경우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당사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한 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 상의 양수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그 밖의 부담 비용

귀하가 그 밖에 부담하여야 하는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마.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우리동네맛집 청해코다리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 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1) 당사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우리동네맛집 청해코다리 가맹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 2)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 3) 사용허가를 얻어 귀하는 계약의 종료 시 식자재 대금 등 당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즉시 지급해야 하며 당사에게 매장 폐점확인서와 매장 내·외부 인테리어 철거사진을 원본으로 당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당사는 귀하의 미수금 정산이 확인되고 폐점확인서와 인테리어 철거사진을 제출받은 후 귀하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가맹계약 시 귀하가 당사에게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을 귀하에게 환급하여 최종 폐점 절차를 마치도록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가. 귀하가 우리동네맛집 청해코다리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2023년도에는 가맹점이 없어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우리동네맛집청해코다리]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가. 당사는 [우리동네맛집 청해코다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당사가 [우리동네맛집 청해코다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우리동네맛집 청해코다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당사로부터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고객에게 제공·판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 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코다리조림(大/中)	좌측에 기재된 이외의 상품·용역을 매입 또는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의 이미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당사로부터 사전에 문서로써 승인을 받아야 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의 판매중지 및 철거를 지시할 수 있으며, 가맹계약갱신거절 및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됨
모든생선찜/구이(大/中)		
도루묵 찜/구이		
가지미 찜/회무침		
망치 매운탕		
물곰 지리탕		
골뱅이, 문어숙회, 도치 알탕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상대방	상품·용역 명	제한내용 및 조건	비고
만19세 미만의 청소년	청소년 보호법·주세법 규정에 의한 주류	판매할 수 없음	법률준수 사항으로 계약서상 명시 없음

가맹점사업자가 상기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메뉴제공)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영업지역 보호 제도 유무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여부

당사는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하여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코다리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가맹본부	계열회사
	우리동네맛집 청해코다리	해당사항 없음

*영업지역 보호 제도는 우리동네맛집 청해코다리와 사업형태가 동일한 동일업종 외의 다른 브랜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가맹점소재지로부터 반경 2km 범위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다. 영업지역을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 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라.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마.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우리동네맛집청해코다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사.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없음

5. .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가.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2023년도에는 가맹점이 없어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2023년도에는 가맹점이 없어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6.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가. 가맹계약기간

우리동네맛집 청해코다리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 년입니다. 다만, 갱신시에는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중 3. 계약종료후의 부담에 기재된 갱신비를 지급하는 경우 1 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나.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최대 10년의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다.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갱신비 납부 후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1년으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갱신비 납부 후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다. 계약 갱신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정보공개서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갱신비를 지급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7조 2항 각호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라.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1)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 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 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조 2항~3항	25조 각호 및 31조 1항 1호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4조 3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4조 4항	
가맹점사업자가 공급품대금 및 기타 대금의 약정한 납입기일을 경과하는 경우	15조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이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16조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7조 1항~2항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 명의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8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20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승인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21조 2항~4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1조 5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22조 9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서 요구 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23조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6조	
가맹점사업자가 노후화 또는 위생·안전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시설 등의 교체·설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27조 2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7조 6항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통지 등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28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29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활동에 정당한 이유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30조 2항~5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30조 7항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5조 1항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 및 별도 약정한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25조 21호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31조 1항 2호	

2)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1조 4항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1 조 3 항 각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4)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31조 2항 각호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당사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 5) 그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개월 전에 당사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하고 당사가 제시하는 합의 해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변경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 일에서 90 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 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가.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및 상속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정보공개서 제공→당사 담당 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6)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정보공개서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정보공개서상의 양수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7)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계존비속의 영업 상속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운영권의 대행, 위탁 등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경우 반드시 당사에 사전 통보하고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행 및 위탁자는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 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가. 경업금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자신 및 제 3 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우리동네맛집 청해코다리와 동종업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 하여서는 안됩니다.

계약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우리동네맛집 청해코다리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업금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코다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

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우리동네맛집 청해코다리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 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11:00 ~ 22:00	최소영업일 연간 350일

-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제 10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 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주방 1명, 홀 1명 이상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라.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청결도 확인→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수시	
제품의 표준화	담당자 매장 방문→매뉴얼 준수 및 사입 체크→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완료	수시	
POS 사용	담당자 매장 방문→POS사용 상태점검→가맹점방문기록 표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수시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가.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광고(브랜드광고, 상품광고 등을 포함한다)를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공동광고	브랜드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의50% / 가맹점사업자수	광고 계획 공고 및 통보→가맹점부담 액 통지(광고1개월 전)→통지 받은 날 로부터 2주일 내 납입
	상품광고 등			
	가맹점모집광고	100%	-	-
공동판촉	행사에 따라 달라짐	기획비용부담	제작비용부담	행사 계획 공고→가맹점 부담액 제시 →행사에 따른 분담금 납입
		기획, 제작 비용 이외는 협의		

*브랜드 및 상품광고와 공동판촉은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 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제공한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이나 계약종료 후에도 제 3 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그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 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의 양 당사자로서, 당사는 귀하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의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벌 사유	관련 계약조문
귀하는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 17 조(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또는 계약기간 내 제 18 조(경업금지 의무) 제 1 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오천만원(30,00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계약서 제33조 제1항
귀하가 제 22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공급품에 대하여 제 23 조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점매입을 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오백만원(5,00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제2항
귀하가 제 31 조 제 2 항 및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폐업 처리하거나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오백만원(5,00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제3항
귀하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가 계약 기간 내에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 등을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귀하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위약벌로 1 일 금삼십만원(300,000 원)씩 당사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33조 제4항
제 1 항 내지 제 4 항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3조 제5항
본 계약에 규정된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제37조 제1항
귀하는 당사 또는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3조 제6항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65 일 내외	p.6 ~ 12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1588-0208) 또는 방문 - 인터넷 홈페이지	D-65	
사업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D-64~63	
점포 계약	- 점포입지 선정 - 점포개발 착수 - 상권분석	필요 시 실시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예치포함)	- 가맹 계약 체결 - 가맹계약서 1 부 교부 보관	D-49~48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 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D-47~44(3 일)	
도면 작성	-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면협의	D-43~38(5 일)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D-37~18(20 일)	
기자재 및 소품설치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D-17~8(10 일)	
교육	- 교육 - 아르바이트교육, 점주교육	D-7~3(5 일)	
오픈	- 오픈 리허설(담당자 판단 후 오픈결정) - 오프닝 행사(담당자 판단)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 일 후에서 7 일 후로 단축됩니다.

2. 분쟁해결 절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거래사 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가맹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상호합의 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의 점포환경 개선 요구가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 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	○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의 개설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판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점사업자	가맹점 운영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시간 등 자세한 일정은 상호 협의하에 정함 → 가맹본부가 교육훈련 진행	가맹점주 부담	요청 시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효율적인 우리동네맛집 청해코다리 가맹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이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 요 내 용	교 육 방 식	기 간	비 고
신규교육	물류 및 매장운영, 서비스 교육, 현장견학	개별 또는 집단강의	개별협의	필수교육
수시교육	가맹점통지사항 및 의견수렴	개별 또는 집단강의		필수교육
특별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요청 내용	개별교육		선택교육
재교육	가맹점관리 및 운영	개별교육		필수교육

[교육은 가맹점별 2명(홀1명, 주방1명)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인원 미달 시 교육이 불가합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교육훈련의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훈련에 미 참여 및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오픈 연기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원/VAT포함)	비고
개점 전 교육	5일(이론 2일 + 현장 3일)	3,300,000	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	개별협의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필요 시 실시
특별 교육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하여 산정	
재교육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필수) 및 가맹점 직원(협의)(총2인)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 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

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주소)
직영점 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직영점 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직영점 없음	

끝

별첨 1 오픈준비물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021)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022)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023)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가맹본부용)

“본인은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더라인』의 『우리동네맛집 청해코다리』 정보공개서를 정히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정보공개서 주요목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정 보 공 개 서 제 공 일 자 : 년 월 일

정 보 공 개 서 수 령 자 : 서명(또는 기명날인)

수령자 주소:

전화/휴대폰:

더 라 인 : 서명(또는 기명날인)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포함) 10 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이 10 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겠습니다.

구분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연락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